

의안번호	2217452
의 퇴 인	백선희의원
회 답 일	2026.6.24.
추계번호	26B145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20억원, 2031년 23억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09억원(평균 22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추가재정소요	20	21	22	22	23	109	22

- 주: 1. 추계금액은 정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서는 최근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수, 육아휴직 사용 실적 등을 기초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가정위탁 보호아동 제도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이에 대한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육아휴직)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항)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9조(육아휴직)	○	• 공식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¹⁾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지 여부와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요건 및 소득수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므로, 현재 가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위탁아동을 양육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므로,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2026.3. 기준)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명목임금상승률(%)	3.3	3.3	3.3	3.3	3.3	3.3	3.3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²⁾에 따라 가정위탁 중인 아동 수는 2024년 기준 9,355명이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육아휴직 사용대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³⁾인 자녀임
 - － 가정위탁은 일반가정위탁과 전문가정위탁으로 구분되나, 가정위탁 유형의 차이에 의한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산출

[표 2] 가정위탁 보호아동 현황

(단위: 명)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가정위탁 중인 아동 수	9,923	9,535	9,330	9,473	9,355		
7세 이하	827	823	940	887	893	1,137	
8세	1,044	979	256	255	244		
9세			316	325	299		
10세			408	368	326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사업대상자 수에 지원단가와 지원기간을 적용하여 산출

- (사업대상자 수) 가정위탁 보호아동 보호자의 고용보험 가입현황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관련 자료가 부재하므로, 본 추계서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 사업대상자의 규모를 추산함
 - － 본 추계서에서 사업대상자 수는 2024년 기준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9,355명)를 토대로 산출하며, 최근 5년간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가 증감하고 있으나 이러한 요인에 의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가정
 - － 육아휴직 사용대상 자녀의 연령은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 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개별 사용 요건에 따른 변

2)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를 고려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서는 ‘2024년 기준 0~8세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1,137명)’를 토대로 산출

-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는 ‘2024년 기준 0~8세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1,137명)’에 ‘육아휴직 사용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5년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수록된 0~8세 아동의 수(255만명)에 당해연도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수(18만명)의 비중(7.2%)을 준용하여 산출
- 따라서 본 추계서는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사업대상자 수는 ‘2024년 기준 0~8세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1,137명)’에 ‘육아휴직 사용률(7.2%)’을 적용하여 82명으로 산출
- 가정위탁보호아동 보호자의 인적 구성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직업군 및 소득 수준이 상이할 수 있으며, 가정위탁보호아동은 매년 신규 진입 아동의 발생과 위탁 종료 등에 따라 규모 및 인적 구성이 변화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장래의 인적 구성 변화 및 그에 따른 재정 변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차이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지원단가) 2025년 기준 월평균 지원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 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

[표 3] 육아휴직 1인당 월평균 지원단가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단가	1.24	1.40	1.60	1.58	2.70

자료: 고용노동부

- (지원기간) 2025년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8.6개월)을 적용하여 산출

[표 4] 1인당 평균 육아휴직 사용기간

(단위: 개월)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지원기간	9.5	9.0	8.9	8.7	8.6

자료: 고용노동부

[표 5] 위탁아동에 대한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육아휴직 사용자 수(A, 명)	82	82	82	82	82	—	—
월평균 지원단가(B, 백만원)	2.9	3.0	3.1	3.2	3.3	—	—
지급기간(C, 개월)	8.6	8.6	8.6	8.6	8.6	—	—
추가재정소요(D=A×B×C, 백만원)	2,037	2,104	2,172	2,243	2,316	10,873	2,175

주: 1.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2.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4. 본 추계서는 최근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수, 육아휴직 사용 실적 등을 기초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가정위탁 보호아동 제도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이에 대한 행태 변화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Ⅲ. 부대의견

□ 본 추계서는 최근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수, 육아휴직 사용 실적 등을 기초로 추계한 결과로, 향후 가정위탁 보호아동 제도 및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와 이에 대한 행태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는 장래에 발생할 사업대상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주요 가정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현시점에서 가용 가능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산출하였으므로, 관련 제도가 구체화 될 경우 본 추계서에서 산출한 추가재정소요를 상회 또는 하회할 수 있음
-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을 토대로 산출한 금액이므로 장래에 발생할 명목임금상승률의 변화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달라질 수 있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